

대학원 무용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무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입학자격)

-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학사학위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박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석사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우수학생의 유치)

무용학과 소속 교수들은 무용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5조 (교육과정)

본 대학원 무용학과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둔다.

제6조 (과목개설)

매 학기 무용학과에서 선정하여 교과목을 개설하며, 학기당 3과목 9학점 이상 인정한다.

제7조 (교·강사 배정)

수업은 전임 교·강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 1) 입학한 후 지도교수를 정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학원 무용학과 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지도교수의 선정은 원생의 제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무용학과 소속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제5장 자격시험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1) 석사과정 : 사단법인에서 인정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또는 무용관련 학술지 투고 및 게재 시 면제. 외국인 학생은 자국에서 인증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2) 박사과정 : 사단법인에서 인정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또는 학술진흥 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게재(개인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외국인 학생은 자국에서 인증한 무용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3) 타 대학원에서 종합학력시험을 치루고 편입한 원생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1) 석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2개 과목, 박사과정은 수강하였던 수업 교과목 중 4개 과목을 시행하여 필기시험으로 시행.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 2)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소속에서 수업한 과목 중에서 수강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 3) 합격기준: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 4) 종합학력시험의 채점은 해당 교과목을 출제한 교강사가 채점한다.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자격시험의 과목과 면제 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선택)

대학원 무용학과 석사과정의 학위취득은 학위논문 및 학위작품 중 선택이 가능하며,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취득은 논문제출로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3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4조 (석·박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 석사 학위작품은 2학기(연계과정), 3학기, 4학기에 학위작품발표 오디션 시행 및 작품계획서 작성 후 심사
-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던 신규 내용의 논문제출로만 학위취득을 인정한다.

제15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대학원 전공세미나 발표의 절차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논문계획서 발표 : 논문작성 이전에 연구논문 형태의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논문계획서는 전공 교수들이 검토 가능하도록 1주일 전에 논문계획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 논문계획서 승인 후 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문지도를 받도록 권장한다.
 - 소논문 게재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 학술진흥 재단 등재 학술지(개인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에 한 편 이상 게재된 논문이 있어야 한다.
- ※단, 외국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학위취득에 관하여 소논문 게재는 필수가 아니며, 선택이 가능하다.

제16조 (예비발표)

학위논문심사 한학기 전에 예비발표를 반드시 시행한다.

제17조 (논문심사위원)

석사과정은 내부 3명, 박사과정은 내부 3명과 외부 2명을 선정하고 심사위원과 학과 교수가 같이 참석하여 논문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제18조 (석사 논문대체 심사절차)

- 학위작품 심사절차 : 2학기, 3학기 오디션 시행, 4학기 학위작품발표회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학위작품 심사방법 : 합격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으로 합격으로 인정하며, 예술성 (25), 표현성(25), 안무성(25), 성실성(25)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초연창작품을 기준으로 안무자의 출연(유·무)를 결정

- 3) 학위작품발표회는 최소 10분 이상 30분 이내의 창작품으로 한다.
(지도교수와 협의하에 시간 출연 여부 등이 조절될 수 있다.)
- 4) 작품제작 시 음악·의상 등은 안무자의 지원을 기준으로 한다.
- 5) 오디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합격 판정으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 6) 학위작품보고서 제출 시 작품 사진은 필수로 포함한다.

제19조 (논문대체 제출)

- 1) 무용학과로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표절검사결과 확인서와 함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커버 필요 없다.
- 2)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한다.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